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10.26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/ 구로구 개봉동 222		
의결번호	2018-구조18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구조안전 분야 〉			
○ 반응수정계수 R=4.0에 상응한 철근 배근(주근/hoop)시 주의사항을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에 명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 바람.			
○ 풍동 산정을 위한 실험조건 및 데이터의 해석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.			
○ 동당 1개소 실시한 평판재하시험을 동당 3개소 이상(코어부분 반드시 포함)으로 추가하여 직접기초의 지내력 및 지반안전성 확인 바람.			
○ 지내력 기초의 ELE, PIT 벽 부분의 시공과정에서 사면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사면 보강 및 콘크리트 벽체 도면에 명기 바람.			
○ 전이층 시공시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기 바람. 끝.			

2018.10.26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